

부산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가합45474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50876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가합45474 판결

전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주식회사 A

2. B 주식회사

3. C

4. D

5. E

6. F

7. G

변론 종결 2014. 1. 16.

판결 선고 2014. 2. 6.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4,179,520원 및 그 중 908,985,160원에 대하여 2013. 4. 22.부터 2013. 9. 7.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F, G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F,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C와 피고 G 사이에 별지 목록1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G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2. 7. 16. 접수 제2268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에게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H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배당금 195,000,000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청구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피고 C와 피고 F 사이에 별지 목록4, 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16.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피고 F은 피고 C에게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H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배당금 112,564,451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청구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의 보증의뢰에 따라 피고 A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받을 대출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3. 22. 피고 A와 사이에 보증금액 금 900,000,000원, 보증기한 2011. 3. 22.부터 2012. 3. 21.(이후 2013. 3. 21.로 연장)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A의 대표이사였던 I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 C, D, E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A의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2013. 3. 8. 피고 A의 채권이 부실처리되어 원고는 2013. 4. 22. 국민은행에게 908,985,160원(= 원금 899,416,386원 + 이자 9,568,77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는 채권보전조치비용으로 6,406,240원을 지출하였으나, 이후 1,211,880원을 회수하여 현재 5,194,360원의 대지급금이 남아있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때에는 피고 A와 그 연대보증인들은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2013. 4. 22.부터 현재까지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상환하여야 한다.

라. 피고 C는 피고 G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2. 7. 16. 접수 제22682호로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F에게 별지 목록4, 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16.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같은 지원 2012. 7. 17. 접수 제2285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국민은행은 별지 목록1, 2, 4, 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H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12. 19.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G에게 195,000,000원, 피고 F에게 112,564,451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A, B, C,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F, G: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 C, D, E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 C,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914,179,520원(= 대위변제금 908,985,160원 + 대지급금 5,194,360원) 및 그 중 908,985,16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3. 4. 22.부터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의 최종 송달일인 2013. 9. 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F, G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C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물적담보로 제공한다면 스스로 무자력에 빠지게 되어 채권자인 원고의 구상권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것임을 잘 알면서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2012. 5. 23. 이후인 2012. 7. 9. 피고 G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7. 16. 피고 F와 사이에 별지 목록 4, 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과 매매예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피보전채권

1) 갑 제1,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6조 제1항은 "본인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로부터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 1. 제5조(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4.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정보(이상 관련인 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8. 본인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개인기업인 경우 공동경영자(실제경영자 포함)에 대하여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인의 신용상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2012. 5. 23. 피고 A의 전 대표이사이자 실제경영자인 I가 국세 5,567,418원을 체납하였다는 신용관리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되어 피고 A에 대한 부실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2. 7. 13. 위 부실사유를 접수하였으나, '보증부대출이 구매자금대출이므로 건별 상환기일 도래시 정상적이 결제를 통하여 부실정상화가 확실하고, 기금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2012. 9. 11. 부실유보처리를 하였다.

다) 피고 A는 2013. 3. 7. 보증부대출금의 원금상환을 연체하여 국민은행은 원고에게 부실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부실유보를 취소한 후 2013. 4. 22. 국민은행에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금을 대위변제하였다.

2) 살피건대, I의 국세체납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6조 제1항 제8호의 '법인기업의 실제경영자에 대하여 공공기록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I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피고 A의 신용상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인정된 때 비로소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사전구상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I의 국세체납에 대하여 피고 A의 정상화가 확실하다는 이유로 부실처리를 유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결국 2012. 5. 23. I가 국세를 체납한 시점에는 피고 A의 신용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13. 3. 7. 피고 A가 대출금 원금을 연체함으로써 비로소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12. 7. 9. 및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12. 7. 16. 아직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매매예약 시로부터 약 8개월 가량 경과한 2013. 3. 7. 비로소 발생한 점, 원고도 2012. 7. 13. I의 국세체납 통보를 받고 원고의 신용상태에 대하여 검토한 후 2012. 9. 11. 보증부대출이 구매자금대출이므로 건별 상환기일 도래시 정상적이 결제를 통하여 부실정상화가 확실하다는 이유로 부실처리를 유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 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채무초과 여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매매예약시인 2012. 7.경 피고 C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356,876,790원의 별지 목록 1, 2, 4, 5 기재 각 부동산과 시가 608,000원 상당의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이 있었던 사실, 소극재산으로는 국민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176,482,844원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와 달리 피고 C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 C, D, E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F, G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양희

판사조승우

판사신동웅

별지